

인천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634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6346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소770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8. 19.

판결선고 2022. 10.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소770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32,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9. 4.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21,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위 범행에 제공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위 금액 중 환수된 1,367,482원을 제외한 19,632,51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19. 4. 18.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다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1,000,0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21,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박미영, 판사 최민혜